

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
 ⇒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

나. 상위법 제명 낫표 적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- 주민등록법 ⇒ 「주민등록법」
-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
 ⇒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
-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⇒ 법 제30조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3. 근거법규 : 「주민등록법」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 : 입법예고 의견없음(2010. 5. 10 ~ 5. 29)

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주민등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”를 “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”로 한다.

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”을 “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
2.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68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6. 4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6. 9(수)
- 라. 위원회 상정 : 2010. 6. 15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전병수)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조문을 반영하고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울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
⇒ 울산광역시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

나. 상위법 제명 낫표 적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- 주민등록법 ⇒ 「주민등록법」
-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
⇒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
-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⇒ 법 제30조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5. 관련법규 : 주민등록법

6. 검토의견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